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학칙 내규*

2014년 5월 1일 제정
2019년 1월 21일 개정
2021년 07월 22일 개정
2022년 09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교육 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학원 상담학과의 합리적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석·박사 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과정

제3조(학위과정)

대학원 상담학과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3장 입학정원

제4조(입학정원)

입학정원은 매 학기 입학 지원자 중 수학능력이 인정된 자에 따라 정한다.

* 상담학과 내규의 모든 항목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제정: 1999. 2. 5, 개정: 2017. 2. 16)에 근거함.

제5조 (추가정원)

대학원 입학 추가 전형이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며 입학 지원자 중 수학능력이 인정된 자로 추가 합격을 실시한다.

제4장 입학

제6조(입학지원자격)

입학자격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제7조(학생 선발방법)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며, 대학원 일정에 따라 추가모집 전형으로 총원할 수 있다.

제8조(입학시험)

입학시험에 관한 문제 출제, 점수 배점, 합격사정, 기타 시험 운영은 학과 사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입학시험과목)

입학시험은 대학원 상담학과의 기초 학력 테스트에 주안점을 둔다.

제5장 교과목 수강 및 취득 학점

제10조(이수과목)

학부에서 상담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자는 상담 전공 관련 교과목을 보충 수강하여야 한다.

1. 이수 대상자는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후 박사과정 입학생, 석사 후 박사과정전공을 바꾼 입학생, 학사 후 석사과정 전공을 바꾼 입학생, 편입학 이전의 전공을 바꾼 편입학생이다.
2. 보충과목 이수 학점은 석사는 최대 12학점, 박사는 최대 24학점이다.
3. 보충 교과목 인정은 학과 교수회의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보충과목 대체인정은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이 현 전공학과의 하위학위 교육과정 교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학과주임교수에게 “하위과정 이수교과목 비교표”를 작성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보충과목 학점 취득으로 인정한다.

제11조(취득학점)

1. 학점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2. 보충 교과목은 한 학기 최대 6학점을 초과 수강할 수 없다.
3. 석사과정 이수 학점은 33학점 이상이다. [전공24학점+연구지도(**세미나, II, III; 2~4학기 신청)9학점]
4. 박사과정 이수 학점은 45학점 이상이다. [전공36학점+연구지도(**세미나, II, III; 2~4학기 신청)9학점]
5. 총 전공 이수학점 중 타 학과에서 수강한 유사 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상당학과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된다. 타 학과 수강 교과목의 전공 일치도는 학과 교수 중 해당 교과목 관련 전공 교수가 평가한다.

제6장 종합학력 자격시험

제12조(종합학력 자격시험 출제)

1. 종합학력 자격시험은 해당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교수가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해당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교수 부재시는 주임교수가 출제 교수를 내정한다.

제13조(종합학력 자격시험)

1. 응시자격은 석사과정 전공 18학점, 박사과정 전공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다. 단 2018학년도 1학기 전 입학자의 응시자격은 석사과정 전공 24학점, 박사과정 전공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다.
2. 외국어자격시험 면제 기준은 2년 이내의 공인영어시험(TOEFL PBT530 ·CBT197 ·IBT71, TOEIC 750, TEPS 600) 기준 점수 획득자와 대학원 학칙에 지정된 외국 수학 경험자로 한다.
3. 응시과목은 석사과정은 전공 공통과목 2개 교과목이며 박사과정은 연구 교과목 중 1과목, 전공 교과목 중 3과목이다.
4. 종합시험 불합격 시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과목을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5. 종합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과목에 한해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한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타인의 답안지 보기, 준비된 쪽지 감추어보기,

타인과 쪽지 주고받기, 교과서/자료 보기 등에 해당한다.

6. 전공 교과목 시험 시간은 각 교과목당 50분이다.

7. 각 교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8. 종합시험 면제 기준은 석사의 경우 KCI 등재 후보지 이상 논문 게재 시 75점 이상이다.

제7장 학위 논문의 작성, 제출 및 심사

제14조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1. 자신의 세부 전공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고 논문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논문 지도 교수 변경시는 적합한 사유에 따라 원 지도교수와 변경 지도교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최종 변경 사항은 주임교수가 승인한다.

제15조 (연구계획서 발표 및 승인)

1.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제출 및 발표하기 전에 종합학력 자격시험(외국어 시험 포함)을 통과하고 과정마다 요구되는 연구업적을 획득해야 한다. 외국어 시험을 대체하는 강의를 듣는 경우에도 연구계획서 제출 및 발표 전에 수강을 완료해야 한다.

2. 박사과정생의 경우 연구계획서를 제출 및 발표하기 전에 상당학관련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업적이 150점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과정생의 소논문 게재범위는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급 이상만 인정한다. 또한, 게재된 지 5년 이내 연구물이어야 하며, 석사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것도 인정한다. 연구 업적 산정은 대학 규정에 따른다.(별첨 3)

3. 석사과정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 및 발표하기 전에 「DKU 상당교육연구」 또는 상당학 관련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업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물은 5년 이내 연구물이어야 하며, 이전 석사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것도 인정한다. 연구 업적 산정은 대학 규정에 따른다.(별첨 3)

4. 연구계획서를 공개발표가 이루어지기 7일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5.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 내에서 정해진 기간과 장소에서 연구계획서를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6. 발표한 연구 계획서에 대하여 학과 교수 2인 이상과 지도교수의 심사 하에 70점 이상은 합격, 7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6. 연구계획서 발표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차기에 수정 발표를 할 수 있다.

제16조 (학위논문의 지도 및 작성)

1. 연구 계획서 발표 시 심사교수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2. 학위 논문 기술은 교내 학위논문 기술 양식에 따른다.

제17조 (학위논문의 심사위원회 구성)

1. 석·박사 과정생은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2. 논문 심사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위원의 전원 참석 하에 진행한다.
3. 석사 학위 논문의 경우 내부 교수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내부 교수 3인과 외부교수 2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4. 외부 심사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 (학위논문의 심사)

1. 논문 심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석사과정: 자격시험→계획서발표→논문작성→예비심사→본심
 - 박사과정: 자격시험→계획서발표→논문작성→예비심사→본심
2. 예비 심사는 교내 전임교수들이 참석하여 협의, 판정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중간심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본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 (석사 학위논문 대체 자격 인정)

1. 석사학위 논문은 연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연구논문은 전공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수료학점(전공 30학점) 취득예정자로 총 평점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로 한다.
2. 학부 전공이 상담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 석사과정의 연구논문은 보충과목 이수자로 한한다.

제8장 학위의 종류, 수여와 취소

제20조 (학위종류)

1.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는 「상담학 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2.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는 「상당학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1조 (학위논문 표절에 관한 학위 취소)

1. 학위 논문 표절이 증명되는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대학원위원회 심의 결과 표절이 증명될 경우 지도교수 경위서, 논문작성자 자필경위서, 논문표절대조 확인서 등을 수령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3. 학위취소 후, 학적상태는 수료로 기재되며 추후 본 대학원에서 학위취득은 불허한다.

제9장 대학원위원회

제22조 (대학원위원회)

학과 내 대학원 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운영한다.

제10장 주임교수

제23조 (주임교수)

1. 학과 교수 중 1인이 대학원 주임교수로 위촉받아 대학원 학사 및 행정 업무에 관하여 책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사항을 논의한다.
2.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별첨1] 논문계획서 발표 양식

연구목적을 분명히 하고 전체적인 연구설계와 방법 기술에 초점을 둘 것.

연구방법 절 이하 문장의 기술방식은 미래형으로 작성할 것.

제목: (가제) 연구대상, 변인, 분석방법이 내포될 수 있도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문제제기, 관련 내용, 목적
2. 연구문제(구체적인 기술) 또는 가설 (필요한 경우 연구모형)
3. 용어의 정의(필요한 경우)
4. 연구의 범위 혹은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연구변인1 (개념, 정의, 이론, 관점 등)
2. 연구변인2 (개념, 정의, 이론, 관점 등)
3. 연구변인들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양적 연구의 예)

1. 연구대상, 참여자, 피험자
2. 측정도구(프로그램 효과/상담효과 검증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소개)
3. 자료수집/실험 설계와 절차
4. 자료분석 방법

IV. 기대되는 결과

V. 참고문헌 (Key References List)

[별첨2] 논문중간발표 양식

분량의 제한을 두지 않되, 최소한 IV절(자료분석결과)까지 발표할 것(논의 및 결론 추후 작성). 초록은 심사가 완료된 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의 편의를 위해 국문초록을 작성하도록 함.

제목: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또는 가설, 필요한 경우 연구모형)
3. 용어의 정의(필요한 경우)
4. 연구의 범위 혹은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모자이크식의 선행연구 나열이 아닌, '구성'을 가질것)

1. 연구변인1 (개념, 정의, 이론, 관점 등)
2. 연구변인2 (개념, 정의, 이론, 관점 등)

3. 연구변인들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향후 Replication이 가능하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

1. 연구대상: 표집방법과 구체적인 구성 비율(남여, 학년, 지역, 등) 제시
2. 측정도구: 제작당시 신뢰도 및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를 가능한 모두 제시 (프로그램 효과/상당효과 검증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소개)
3. 자료수집/실험 설계와 절차
4. 자료분석 방법: 사용된 통계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그 방법의 적절성과 특정 통계분석 방법 내의 기법 등)
*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 절차 및 인터뷰나 면담 질문 등의 타당성 입증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문제 1
 2. 연구문제 2
 3. 연구문제 3
- (질적 연구의 경우 면담/자료를 구조화 하여 요약 제시하고 원자료는 부록으로 처리)

V. 논의 및 결론

1. 연구요약 (연구의 전반적 요약)
2. 논의 (결과에 대한 사전연구와의 비교논의, 시사점)
3. 결론 (연구자의 주장, 시사점,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VI. 참고문헌

(본문 중 인용한 모든 문헌 제시, 전공학회의 참고문헌 양식 참조)

부록

(측정도구를 사용한 양적 연구이거나 질문/인터뷰를 사용한 질적 연구의 경우 사용당시 그대로의 형식으로 제시)

[별첨 3] 연구 업적 산정 방식

제10조 (연구업적)

1.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기여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며, 기여율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로 계산한다.

가. 논문의 경우

- (1) 단독연구 : 150%
- (2) 공동연구에서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 $(1/n) \times 2$
- (3) 공동연구에서 참여 연구자 : $\{1/(n+1)\} \times 2$

나. 논문 이외의 실적: 학술서적인 경우만 인정

- (1) 단독 저서 : 150%
- (2) 공동저서 (세부책임, 참여) : $1/n$

2. 위에서 n은 전체 연구자 수를 말하며, 저자 수가 15인 이상일 경우 n은 15로 산출한다.

3.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 및 학부생이란 논문발행일 당시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원 또는 학부를 졸업한 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 본인의 소속을 단국대학교로 표기한 경우를 말한다.

4. 연구자 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동연구자 수 : 본인을 포함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수

5. 역할구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단독 : 공동연구자 없이 단독으로 연구에 참여한 경우

나. 제1저자 :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경우

다. 교신저자 :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으며 논문 출판에 최종적으로 기여한 자로 연구실적물에 교신저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

라. 세부책임 : 연구보고서 업적 중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책임자인 경우

마. 참여 :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6. 역할구분은 연구실적물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